

목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

영어영문학과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

제 정 : 2010년10월20일
개 정 : 2018년10월17일
개 정 : 2020년09월16일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「학칙」 제 52조 및 「졸업논문 시행 규정」에 따른 영어영문학과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졸업논문의 대체) 본 학과의 졸업논문은 어학시험 성적, 종합시험 및 정규직 취업으로 대체한다.

(단, '영어회화 7' 또는 '영어회화 8'의 의무수강 조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된다..)

제3조(어학시험 성적) 어학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- ① 어학시험 성적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'영어회화 7' 또는 '영어회화 8'을 이수하고 TOEIC 700(이에 상응하는 TOFEL 또는 TEPS 성적)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「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'영어회화 7' 또는 '영어회화 8' 수강하지 아니하고 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다. (본 조항은 2019학년도 1학기 파견 및 교환학생부터 적용한다.)
- ③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취업자(가족기업 취업자는 2대보험 가입자), ROTC임관(예정자) 및 외국인 유학생은 '영어회화 7' 또는 '영어회화 8'을 이수하고 어학시험 성적을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조(종합시험)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- ① 종합시험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하고 하는 자는 '영어회화 7' 또는 '영어회화 8'을 이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취업자(가족기업 취업자는 2대보험 가입자), ROTC임관(예정자) 및 외국인 유학생만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② 종합시험은 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,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.

③ 종합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학과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지정 할 수 있다.

④ 종합시험 범위는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및 실용영어의 전 분야를 포괄하되, 전반적인 영어해득력의 수준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다.

⑤ 종합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⑥ 종합시험의 시행일을 매 학기 말 시행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